

#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세부추진지침

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대책에 따른 시행과정에서 효율을 기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.

## □ 추진기간 : 2019. 1. 1. ~ 12. 31.(1년간)

○ (시행취지) 자체점검 일정에 따라 점검자의 성능확인 추진 기간이며, 기간 중 성능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하기 위함.

### ○ (업무처리)

- 추진기간 중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**30일 이내**에 그 결과제출(접수)
- 연중 자체점검을 2회 이상 실시할 대상은 상반기 점검결과는 계도 공문을 발송하고, 하반기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명령 발부
- 조치명령 보완기간은 조치대상 및 공사규모 등\*을 감안하여 소방서장이 기간\*\*을 정하여 발부

\* 업체선정, 입주민동의, 입주자대표회의, 처리절차 등 관계인의 의견사항 최대한 반영

\*\*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(2016.1.21.개정)으로 60일 이내 조치명령기한은 삭제됨.

#### 〈적용예〉

- ❖ 2019. 12. 23.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(2020.1.22.한)점검결과 제출  
→ (2020.4.12. )
- ❖ 2019. 1. 23.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, 2019. 7월중 종합정밀점검 실시예정  
→ . ,
- ❖ 입주자대표회의 의결, 업체선정, 계약체결기간 등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관계인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명령기간을 산정 ※
- ❖ 기, 조치명령 시행한 대상은 필요시 공사규모 등에 따라 조치명령기한 연장 등의 조치

## □ 연혁법령 적용 (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 제5조 제1호 등)

○ (현행규정)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.

○ (구,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98조)

- 시행기간 : 99.12.31.단서 신설 ~ 02.4.12.개정(시행)으로 단서 삭제
-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 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. 다만, 제97조 제7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(계단실형 아파트)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○ (업무처리)

- 개정된 규정이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경우 **완화된 규정을 적용**, 개정된 규정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
- **02.4.12.이전** 건축허가 신청한 특정소방대상물(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97조 제7호 단서에 의한 계단실형아파트)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**제98조 단서규정 적용**

〈적용예〉

- ❖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에 대하여 관할시청에 2000. 5. 20.건축허가 신청한 경우 (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97조 제7호단서 및 제98조 제1호 단서에 의한 아파트)  
→ ( 5 1 )

□ 행정(협조)사항

- 본 지침은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추진을 위한 지침임.
-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(보완)이 추진·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
  - (소방관서) 담당자 업무숙지 및 대상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업무 처리 등으로 민원발생의 최소화
  - (소방시설협회, 소방시설관리협회) 소속 회원사에게 지침사항을 전파하고, 대상처에서 성능개선(보완)될 수 있도록 안내

**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**

[시행 2000. 4. 1] [행정자치부령 제79호, 1999. 12. 31, 일부개정]

**제15조 (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호구역·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)**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·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<개정 1993. 11. 11., 1995. 5. 27.>

3.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되, 1개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이내로 할 수 있다. 다만, 계단실형 아파트(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단실을 갖춘 아파트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서 하나의 계단으로부터 출입할 수 있는 세대수가 층당 2세대이하인 경우에는 그 계단 및 그로부터 출입하는 모든 층의 세대를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하고, 복도형아파트등 그외의 아파트는 2개층을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한다.

**제97조 (비상방송설비)**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<개정 1984. 8. 16., 1993. 11. 11., 1998. 5. 12., 1999. 12. 31.>

7. 2층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,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·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,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·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. 다만,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으로서 제15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실형 아파트를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.

**제98조 (비상방송설비의 배선<개정 1993. 11. 11.>)**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<개정 1993. 11. 11., 1999. 12. 31.>

1.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. 다만, 제97조제7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단실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2. 그 밖의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90조제1호·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자동화재탐지설비"는 "비상방송설비"로 본다.

**부칙** <제79호, 1999. 12. 31.>

이 규칙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**

[시행 2002. 4. 12] [행정자치부령 제164호, 2002. 4. 12, 일부개정]

**제98조 (비상방송설비의 배선<개정 1993. 11. 11.>)**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<개정 1993. 11. 11., 1999. 12. 31., 2002. 4. 12.>

1.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.
2. 그 밖의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90조제1호·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자동화재탐지설비"는 "비상방송설비"로 본다.